

1.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사유 등 신설(안 제10조의2)
- 나.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 6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며, 실물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된 경우
4.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포함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New/Reissue of Mobile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아래 []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put a √ in the applicable [] below.)

신청 내용 (Type)	• 신규 발급(New) []	• 재발급(Reissue) []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Full Name)
	• 국내거소신고 번호(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연락처(Phone No.) - -

아래 []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put a √ in the applicable [] below.)

재발급 사유 (Reasons for reissue)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Reissuance of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
	• 이동통신단말장치 변경(Change of mobile device) []
	• 기타(Other) []
	• 분실일자(Date of Loss of mobile device)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7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Article 10-2 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제출 서류 (Documents to be submitted)	유효한 여권(Valid Passport),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수수료 없음 (No Fee)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u>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u>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u> <u>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며, 실물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u> <u>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u>		

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
우

2.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
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
증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발급된 모바일국내거소신고
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
납받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
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
실된 경우

4.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부
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
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포함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